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군인의 시간외 근무수당 등에 관한
규정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- 가. 공무원은 '현업공무원' 지정을 통해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는 인원에 대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나 군인은 관련 법령과 24시간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사회적 통념상 규정화된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'현업공무원'을 지정하는 것이 제한
- 나. 현행작전부대의 군인은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24시간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보상체계가 없으며,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상 군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당지급체계 구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령을 제정

3. 주요내용

- 가. 군인의 근무시간은 각 부대장등이 지정
- 나. 적의 침투 및 국지도발에 대응하거나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인은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 제4항의 상한시간을 미적용하고 그 대상 및 상한시간은 인사혁신처장,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군인보수법,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, 국가공무원법,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 (인건비 예산 범위내)

다. 합 의 : 인사혁신처, 기획재정부와 협의

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 : 2023. 10. 20. ~ 11. 29.

2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(이견 없음)

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안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의 복무 중 근무시간에 관한 사항과 「국가공무원법」 제47조 및 「군인보수법」 제17조의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영에서 “부대장등”이란 합동참모본부 소속 군인에 대하여는 합동참모의장, 각 군 소속 군인에 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,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군인에 대하여는 그 부대장, 국방부 직할기관 소속 군인에 대하여는 그 기관장을 말한다.

제3조(군인의 근무시간 등) 부대장등은 직무의 성질, 지역, 부대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군인의 통상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부대장등은 변경하려는 내용과 이유를 미리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4조(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등) ① 적의 침투 및 국지도발에 대응하거나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에는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제4항

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수당지급대상 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.

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시간외근무수당의 상한시간 및 지급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

제5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군인의 근무시간 및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」 및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을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복지정책과	
연 락 처	(02) 748 - 6613